



2023. 4. 24.

2022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논산시결산검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논산시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논산시장

제목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

2022회계연도 논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3년 4월 10일 ~ 4월 24일(15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남 충(논산시 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문 관 복(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박 찬 해(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서 형 욱(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이 지 웅(세무사)

붙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논산시결산검사위원

결 산 검 사 의 견 서

논산시장 귀하

2023년 4월 2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논산시 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2회계연도 논산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논산시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논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논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불입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논 산 시 결 산 검 사 위 원

대표검사위원	김	남	충
검 사 위 원	문	관	복
검 사 위 원	박	찬	혜
검 사 위 원	서	형	욱
검 사 위 원	이	지	웅



목 차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1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4
1. 논산시 재정의 현황	5
2. 세입·세출 결산	7
3. 기금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19
5. 성과보고서	21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23
III.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5

I.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1.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세입·세출 등 제장부의 열람, 증빙자료 대조, 현지 확인, 금고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검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결산검사기간 : 2023. 4. 10. ~ 4. 24.(15일간)

3.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김 남 충	세입, 세출결산 총괄	논산시의회 의원
위 원	문 관 복	성과보고서, 특별회계, 공유재산, 물품	전직 공무원
위 원	박 찬 해	세입전반, 기금, 채권, 채무	전직 공무원
위 원	서 형 욱	세출전반, 예산이용·전용, 예비비	전직 공무원
위 원	이 지 응	재무제표 전반, 건의·수범사례	세 무 사

4. 중점검사내용

가. 세입 분야

- 1)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2) 과세관련자료 적정 여부
- 3) 체납액 정리 및 적법 결손처분의 여부

4) 효율적인 자금 관리여부 및 운용 실태

나. 세출 분야

- 1) 세출예산의 적법편성 및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
- 2) 이월 예산 및 예산 이용, 전용의 적정 여부
- 3)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검사

다. 기금 결산

- 1) 기금 관리 운영의 적정성 여부

라. 재무제표

- 1)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절차의 적정성 확인 여부
- 2)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의 수정방안 및 개선 대안 제시 확인

마. 성과보고서

- 1)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 측정방법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 확인
- 2) 성과실적의 신뢰성, 실적치의 적합성, 실적치 측정 타당성 확인

바. 채권, 채무 관리

- 1) 채권·채무 관리의 적정 여부
- 2) 채무 변제의 이행 실태

사. 재산 및 기금, 물품 관리

- 1)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대장 등재 여부
- 2) 정수 물품 관리 실태 및 현재액보고서와 일치 여부

아. 금고의 결산

- 1) 수입·세출회계별 결산액은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 여부
- 2) 수입계산서상의 금액과 금고의 수납액 결산금액과의 상호 부합 여부

위 내용 외에 시정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별도 후술하였습니다.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논산시 재정의 현황

가.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세입(수입)	996,601,353	1,167,809,482	1,176,754,098	1,275,337,066	1,429,395,497
	세출(지출)	706,944,879	913,131,627	935,335,172	1,014,161,954	1,182,562,064
	결산상잉여금	289,656,474	254,677,855	241,418,926	261,175,112	246,833,433
일반회계	세입	860,041,155	1,004,905,013	1,022,752,875	1,134,126,529	1,298,965,605
	세출	634,571,900	823,961,328	826,279,379	917,245,970	1,080,856,818
	결산상잉여금	225,469,255	180,943,685	196,473,496	216,880,559	218,108,787
특별회계	세입	136,560,198	162,904,469	154,001,223	141,210,537	130,429,892
	세출	72,372,979	89,170,299	109,055,793	96,915,984	101,705,246
	결산상잉여금	64,187,219	73,734,170	44,945,430	44,294,553	28,724,646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은 9.4%, 세출은 13.7% 증가, 잉여금은 3.9%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은 12.1%(154,058,431천원) 증가, 세출결산액은 16.6%(168,400,110천원) 증가, 결산상잉여금은 5.5%(14,341,679천원) 감소하였음.

세출결산액을 2022.12.31.기준 주민수 117,143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10,095천원임.

논산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차 입 금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 참고 : 2016년 채무 43,165,000천원 상환

논산시 최근 3년간 차입한 사실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0원임.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426,748,051	1,429,395,497	1,182,562,064	246,833,433
일반회계	1,297,708,099	1,298,965,605	1,080,856,818	218,108,787
특별회계	129,039,952	130,429,892	101,705,246	28,724,646
공기업	97,196,598	98,228,788	71,881,258	26,347,530
기 타	31,843,354	32,201,104	29,823,988	2,377,116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명세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59,048,758	26,695,042	79,130,997	18,306,143	63,652,493
일반회계	55,721,962	25,858,810	68,521,245	15,888,707	52,118,063
특별회계	3,326,796	836,232	10,609,752	2,417,436	11,534,430
공기업	3,326,796	836,232	10,609,752	2,290,295	9,284,455
기 타	0	0	0	127,141	2,249,975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29,395,497천원으로 예산현액 1,426,748,051천원보다 2,647,446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7%인 1,182,562,064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6,833,433천원임.

이중 명시이월비 59,048,758천원, 사고이월비 26,695,042천원 및 계속비 79,130,997천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8,306,143천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3,652,493천원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 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63,652,493천원임이 확인되었음.

나. 일반회계

1) 세입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결산액	1,297,708,099	1,316,707,319	1,298,965,605	801,619	16,940,095
결산확인액	1,297,708,099	1,316,707,319	1,298,965,605	801,619	16,940,095
차액	0	0	0	0	0

수납액 1,298,965,605천원은 예산현액보다 1,257,506천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6%이고, 불납결손액은 801,619천원임.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298,965,605	1,298,965,605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율
2022	1,297,708,099	1,316,707,319	1,298,965,605	801,619	16,940,095	98.6%
2021	1,130,145,816	1,151,185,028	1,134,126,529	813,515	16,244,984	98.5%
증감	167,562,283	165,522,291	164,839,076	△11,896	695,111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천원)

재원별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1,297,708,099	1,316,707,319	1,298,965,605	801,619	16,940,095
자체 수입	소계	114,676,148	138,794,998	121,054,736	801,619	16,938,643
	지방세	74,671,699	82,612,261	76,838,300	514,223	5,259,738
	세외수입	40,004,449	56,182,737	44,216,436	287,396	11,678,905
이전 수입	소계	946,806,903	940,598,787	940,598,787	0	0
	지방교부세	525,798,282	525,798,283	525,798,283	0	0
	조정교부금등	40,991,498	40,991,498	40,991,498	0	0
	보조금	380,017,123	373,809,006	373,809,006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6,225,048	237,313,534	237,312,082	0	1,452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전년도 1,134,126,529천원보다 164,839,076천원이 많은 1,298,965,605천원이 수납되어 14.5% 증가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813,515천원보다 11,896천원 감소한 801,619천원이며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235.082천원, 평가액부족 234.583천원, 소멸시효 완성 104,054천원 등임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5.9%인 76,838,300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44,216,436천원, 지방교부세는 40.5%인 525,798,283천원, 조정교부금등은 40,991,498천원, 보조금은 373,809,006천원 수납되었음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 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1,138,832,172	1,297,708,099	1,080,856,818	154,770,708	62,080,573
결산확인액	1,138,832,172	1,297,708,099	1,080,856,818	154,770,708	62,080,573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138,832,172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158,875,927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297,708,099천원임
- 세출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음
- 이체는 예산현액의 16.8%인 218,450,007천원으로서 업무이관과 조직개편 등에 기인함
- 예비비 예산액은 2,100,849천원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 사업 외 12건 2,053,64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069,894천원을 지출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3%에 해당하는 1,080,856,818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54,770,708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60,390,654천원, 사고이월액은 25,858,810천원, 계속비이월액은 68,521,244천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에 해당하는 62,080,573천원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80,856,818	1,080,856,818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과목	2021회계연도 집행액	2022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계	917,245,970	1,297,708,099	1,080,856,818	83.3	163,610,848	17.8
일반공공행정	86,440,160	244,124,295	205,418,387	84.1	118,978,227	137.6
공공질서및안전	4,373,521	10,503,500	3,949,051	37.6	△424,470	△9.7
교육	10,016,760	9,480,191	9,255,232	97.6	△761,528	△7.6
문화및관광	40,067,126	72,140,283	52,433,095	72.3	12,365,969	30.9
환경보호	63,962,974	68,963,944	61,074,614	88.6	△2,888,360	△4.5
사회복지	247,637,542	278,993,152	270,751,780	97.0	23,114,238	9.3
보건	24,869,616	48,805,797	31,288,434	64.1	6,418,818	25.8
농림해양수산	152,085,508	176,071,432	153,200,028	87.0	1,114,520	0.7
산업·중소기업	32,791,591	46,959,259	35,017,510	74.6	2,225,919	6.8
수송및교통	61,957,141	86,121,980	58,786,128	68.3	△3,171,013	△5.1
국토및지역개발	85,854,688	141,194,299	89,855,264	63.6	4,000,576	4.7
예비비	0	47,200	0	0	0	0
기타	107,189,343	114,302,767	109,827,295	96.1	2,637,952	2.5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70,751,780천원, 일반공공행정 205,418,387천원, 농림해양수산 153,200,028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137.6%), 문화및관광(30.9%), 보건(25.8%), 사회복지(9.3%) 등 임.

다. 특별회계

1)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29,039,952	132,863,438	130,429,892	52,077	2,381,46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7,196,598	98,970,312	98,228,788	0	741,524
상 수 도	52,429,519	54,152,780	53,557,510	0	595,270
하 수 도	44,767,079	44,817,532	44,671,278	0	146,254
기 타 특 별 회 계	31,843,354	33,893,126	32,201,104	52,077	1,639,945
의 료 급 여	3,529,032	3,931,858	3,552,914	0	378,944
수 질 개 선	1,343,864	1,344,508	1,344,508	0	0
농 공 단 지	7,759,351	7,792,434	7,792,434	0	0
논산시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196,721	215,726	215,726	0	0
주 택 사 업	354,067	378,829	348,470	0	30,359
주 차 장 관 리	6,979,047	7,531,378	6,969,834	52,077	509,467
토 지 관 리	1,356,769	2,373,333	1,652,158	0	721,175
도 시 재 생	3,322,991	3,323,304	3,323,304	0	0
국방국가산업단지 조 성 사 업	7,001,512	7,001,756	7,001,756	0	0
결 산 확 인 액	129,039,952	132,863,438	130,429,892	52,077	2,381,469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30,429,892천원은 예산현액보다 1,389,940천원이 더 수납
-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서 전년도에 비해 0.3% 감소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30,429,892	130,429,892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2)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06,857,040	129,039,952	101,705,246	14,772,780	12,561,92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6,757,599	97,196,598	71,881,258	14,772,780	10,542,560
상 수 도	41,429,035	52,429,519	35,223,334	9,791,122	7,415,063
하 수 도	35,328,564	44,767,079	36,657,924	4,981,658	3,127,497
기 타 특 별 회 계	30,099,441	31,843,354	29,823,988	0	2,019,366
의 료 급 여	3,529,032	3,529,032	3,378,538	0	150,494
수 질 개 선	1,263,864	1,343,864	1,302,367	0	41,497
농 공 단 지	7,759,351	7,759,351	7,579,123	0	180,228
논산시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196,721	196,721	177,019	0	19,702
주 택 사 업	354,067	354,067	248,204	0	105,863
주 차 장 관 리	5,315,134	6,979,047	5,600,978	0	1,378,069
토 지 관 리	1,356,769	1,356,769	1,215,558	0	141,211
도 시 재 생	3,322,991	3,322,991	3,322,201	0	790
국방국가산업단지 조 성 사 업	7,001,512	7,001,512	7,000,000	0	1,512
결 산 확 인 액	106,857,040	129,039,952	101,705,246	14,772,780	12,561,926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06,857,040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2,182,91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9,039,952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이용, 전용은 없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8%에 해당하는 101,705,246천원이며, 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4,772,780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7%에 해당하는 12,561,926천원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1,705,246	101,705,246	0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다.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단위 : 천원)

회 계 별	이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35	169,543,488	144	63,717,450	122	26,695,042	69	79,130,996
일반회계	306	154,770,708	138	60,390,654	119	25,858,810	49	68,521,244
특별회계	29	14,772,780	6	3,326,796	3	836,232	20	10,609,752
공기업	29	14,772,780	6	3,326,796	3	836,232	20	10,609,752
기 타	0	0	0	0	0	0	0	0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검사결과 결산액과 일치하였다.

3.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6,478,003	154,255,869	164,597,235	10,341,366	170,733,872
자 활 기 금	795,142	28,950	28,950	0	824,092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111	4,452	304,452	300,000	7,563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00,000	0	0	0	800,000
재 난 관 리 기 금	2,736,239	375,084	632,450	257,366	3,111,323
옥외광고정비기금	297,132	10,000	10,000	0	307,132
식 품 진 흥 기 금	332,258	2,490	2,490	0	334,748
농 촌 발 전 기 금	0	3,020,033	3,020,033	0	3,020,0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7,053,113	132,404,005	142,188,005	9,784,000	139,457,1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461,008	18,410,855	18,410,855	0	22,871,863

2022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6,478,003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64,597,235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10,341,366천원을 공제한 170,733,872천원임.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평균 증 가 율
전년도말 조성액	9,378	9,800	67,763	53,269	16,478	15.1
당해연도 조성액	1,178	58,751	2,248	53,894	164,597	243.8
당해연도 사용액	756	756	16,742	84,756	10,341	92.3
당해연도말 조성액	9,800	67,795	53,269	22,407	170,734	104.3

논산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104.3%p 증가하였고,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등 9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170,73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48,32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본년도 기금의 지출액은 10,341백만원임.

4. 재무제표의 결산

2022회계연도 논산시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735,071,145	3,986,260,869	251,189,724	6.7
I. 유 동 자 산	318,252,734	450,284,119	132,031,385	41.5
II. 투 자 자 산	9,938,831	10,629,145	690,314	6.9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92,683,944	296,743,805	104,059,861	54.0
IV. 주 민 편 의 시 설	462,977,396	511,169,850	48,192,454	10.4
V. 사 회 기 반 시 설	2,746,291,093	2,713,359,012	(-)32,932,081	(-)1.2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927,147	4,074,938	(-)852,209	(-)17.3
부 채	35,698,018	42,849,349	7,151,331	20.0
I. 유 동 부 채	16,654,386	22,523,153	5,868,767	35.2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9,043,632	20,326,196	1,282,564	6.7
순 자 산	3,699,373,127	3,943,411,520	244,038,393	6.6
I. 고 정 순 자 산	3,269,874,100	3,348,366,434	78,492,334	2.4
II. 특 정 순 자 산	19,398,076	171,552,397	152,154,321	784.4
III. 일 반 순 자 산	410,100,951	423,492,689	13,391,738	3.3

2022회계연도 말 논산시의 자산은 3,986,260,869천원으로 전년도의 3,735,071,145천원보다 251,189,724천원(6.7%) 증가하였고, 부채는 42,849,349천원으로 전년도의 35,698,018천원보다 7,151,331천원(20.0%) 증가하였음.

2022회계연도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차감한 논산시의 순자산은 3,943,411,520천원이며 전년도의 3,699,373,127천원보다 244,038,393천원이 증가하였음.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인건비	129,708,389	137,846,459	8,138,070	6.7
II. 운영비	227,443,766	256,562,918	29,119,152	12.8
III. 정부간이전비용	15,447,065	17,568,382	2,121,317	13.7
IV. 민간등이전비용	391,649,973	400,219,275	8,569,302	2.2
V. 기타비용	60,389,174	63,683,962	3,294,788	5.5
VI. 비용총계(B)	824,638,367	875,880,996	51,242,629	6.2
VII. 자체조달수익	123,335,617	135,176,427	11,840,810	9.6
VIII. 정부간이전수익	789,354,537	938,068,259	148,713,722	18.8
IX. 기타수익	739,443	13,303,419	12,563,976	1699.1
X. 수익총계(A)	913,429,597	1,086,548,105	173,118,508	19.0
XI. 재정운영결과 (B-A)	(-)88,791,230	(-)210,667,109	(-)121,875,879	137.3

2022회계연도의 논산시의 총비용은 875,880,996천원이며 총수익은 1,086,548,105천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210,667,109천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 논산시의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173,118,507천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51,242,629천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 전년도보다 121,875,878천원이 감소하였음.

5. 성과보고서

논산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합 계	10	108	207	193	14	93.2
의회사무국	1	1	2	2	0	100
기획감사실	1	2	6	4	2	66.7
예산실	1	2	6	6	0	100
미래전략실	1	5	7	7	0	100
홍보협력실	1	1	5	5	0	100
행정복지국	1	25	55	47	8	85.5
경제문화국	1	35	57	55	2	96.5
건설도시국	1	28	41	39	2	95.1
직속기관	1	8	26	26	0	100
사업소	1	1	2	2	0	100

논산시에서는 본 회계연도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

사업목표(108개)-단위사업(20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논산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07개의 지표수 중 19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3.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14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였음.

6.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 계	6,188,020	765,692	975,984	5,977,728
일반회계	6,072,536	765,692	959,757	5,878,471
특별회계	20,484		16,227	4,257
기 금	95,000			95,000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77,728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 환 소 멸 액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합 계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기 금	0	0	0	0

검사결과 채무는 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용도	구분	2021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		2022년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1,825,399,363	271,033,269	14,606,423	2,081,826,209
행정 재산	소계	1,802,006,683	60,628,046	14,378,862	1,848,255,867
	공용재산	361,049,917	2,676,362	469,553	363,256,726
	공공용재산	1,433,809,771	57,799,658	13,899,236	1,477,710,193
	기업용재산	800,111	0	0	800,111
	보존용재산	6,346,884	152,026	10,073	6,488,837
	일반재산	23,392,680	623,737	227,561	23,788,856
	건설중인재산	0	209,781,486	0	209,781,486

라. 물품

본 년도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당해 연도 증감		2022년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수량	1,573	171	72	1,672
금액	14,060,980	828,408	706,213	14,183,175

Ⅲ.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원이 발생 했을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세외수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바람	미 래 전 략 실 안 전 총 관 과 100 세 행 복 과 회 계 과 민 원 과 지 역 경 제 과 투 자 유 치 과 국 방 산 업 과 문 화 예 술 과 체 육 진 흥 과 관 광 과 농 촌 활 력 과 축 수 산 과 건 설 과 산 림 공 원 과 지 역 개 발 과 도 시 주 택 과 도 로 과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상 하 수 도 과 보 건 행 정 과 보 건 위 생 과 평 생 학 습 도 서 관
2	세입예산과목 분류 오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성질별 재원 분석을 정확하게 하여 적절한 예산과목에 따라 세입예산을 분류하기 바람	복 지 정 책 과 100 세 행 복 과 주 민 생 활 지 원 과 문 화 예 술 과 체 육 진 흥 과 농 촌 활 력 과 도 로 과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및 체납자에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주민생활지원과 농촌활력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지역개발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미수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징수율 10% 미만 부서(읍면동 제외)
4	금고별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개선	잔액증명서 발행 시 회계별로 분리하여 가이월 확인서와 같은 별도 서식에 따라 회계별 잔액 증명을 명시하고 금고 직인을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기 바람	회 계 과 상 하 수 도 과
5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및 세입조치 미이행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 현금 1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 또는 반환 조치하기 바람	회 계 과 신 속 허 가 과
6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	자치행정과 등 11개 부서에서는 총 15건에 723,465천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액 불용 처리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 성립 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삭감 조정 할 것	자 치 행 정 과 지 역 경 제 과 국 방 산 업 과 문 화 예 술 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건 설 과 산 림 공 원 과 도 시 주 택 과 교 통 과 건 강 증 진 과 보 건 위 생 과 감 염 병 관 리 과
7	지방보조금(자체 재원)사업 재원 배분 조정 필요	민간보조금 지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민간 보조사업자의 책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시비와 자부담의 재원 조정 할 것을 권고	예 산 실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8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율 제고	자체세입원 징수 결정 시부터 환급이나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 결정하여 납기 내 징수하고 체납 시 체납 사안 별로 실태 분석을 통한 대책을 강구 하여 징수 업무에 철저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도 시 주 택 과 교 통 과 토 지 정 보 과
9	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	하수도 사업의 면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하여 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 등 대안을 모색하고 하수도 요금을 일정 수준 현실화율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상 하 수 도 과
10	기금관리·운용 개선 필요	본래의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하거나 아니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여 기금 존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도 시 주 택 과 보 건 위 생 과
11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매년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10,032백만원, 2021년 13,149백만원, 2022년 15,888백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노력을 통해 확보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하기 바람.	아동복지돌봄과 지 역 경 제 과 투 자 유 치 과 농 촌 활 력 과 환 경 과 교 통 과 ※보조금반납금 1억원 이상 및 예산현액 대 보조금 반납 비율 40% 이상 사업
12	예비비 지출 부적정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 시에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철저하기 바람	자 원 순 환 과 건 설 과
13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예산의 규모 증가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와 노력을 해주기 바람	예 산 실

연번	제 목	개선 및 권고사항	관 련 부 서
14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달성율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기 바람	세 무 과 민 원 과 투 자 유 치 과 산 립 공 원 과 건 강 증 진 과 평 생 학 습 도 서 관
15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 소홀	행정재산이 정비 보수 또는 관리 되지 않은 폐 건물로 존치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하기 바람	상 하 수 도 과
16	시 위생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	시 위생매립장의 매립이 시작된지 22년이 경과 하여 총 매립 면적이 전체 용량의 18%밖에 남아 있지 않아 앞으로의 수명은 채 5년이 남아있지 않음. 소각장 설치사업 및 쓰레기 감소 대책 사업비 등이 투입되어 위생매립장의 사용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자 원 순 환 과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 현 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입과목	예산액	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비 고
합계		0	2,373,196	1,247,277	1,125,919 (2,016)	()는 결손액
미래전략실	211-02 공유재산임대료	0	2,087	950	1,137	
안전총괄과	225-01 지난년도수입	0	8,376	650	7,726	
100세행복과	소계	0	27,666	27,666	0	
	213-05 기타수수료	0	7,336	7,336	0	
	214-05 기타사업수입	0	20,330	20,330	0	
회 계 과	소계	0	30,494	26,534	3,960	
	224-06 위약금	0	17,934	17,934	0	
	225-01 지난년도수입	0	12,560	8,600	3,960	
민 원 과	소계	0	53,911	23,904	30,007	
	225-01 지난년도수입	0	30,826	3,520	27,306	
	234-01 차량관련과태료	0	23,085	20,384	2,701	
지역경제과	234-02 기타과태료	0	1,113	400	713	
투자유치과	소계	0	29,110	29,110	0	
	216-03 기타이자수입	0	4,482	4,482	0	
	224-07 그외수입	0	24,628	24,628	0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비 고
국방산업과	224-07 그외수입	0	371	371	0	
문화예술과	소계	0	31,201	31,201	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0	7,186	7,186	0	
	212-09 기타사용료	0	14,022	14,022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0	579	579	0	
	216-03 기타이자수입	0	7,214	7,214	0	
	231-01 과징금	0	2,000	2,000	0	
	234-02 과태료	0	200	200	0	
체육진흥과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63,688	163,688	0	
관 광 과	소계	0	1,789	1,789	0	
	216-03 기타이자수입	0	101	101	0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688	1,688	0	
농촌활력과	소계	0	728,462	378,577	349,885	
	21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268,163	268,163	0	
	225-01 지난년도수입	0	357,308	12,008	345,30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102,991	98,406	4,585	
축수산과	소계	0	36,051	36,051	0	
	226-01 공공예금이자수입	0	153	153	0	
	224-07 그외수입	0	26,685	26,685	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9,213	9,213	0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비 고
건 설 과	소계	0	87,456	83,392	4,064	
	212-05 공유수면사용료	0	24,766	20,702	4,064	
	215-01 징수교부금수입	0	6,807	6,807	0	
	216-03 기타이자수입	0	872	872	0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54,911	54,911	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100	100	0	
산림공원과	소계	0	19,757	19,097	660	
	225-01 지난년도수입	0	1,834	1,174	66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3,912	3,912	0	
	236-01 부담금	0	14,011	14,011	0	
지역개발과	소계	0	352,826	18,844	333,982	
	224-07 그외수입	0	4,103	4,103	0	
	225-01 지난년도수입	0	348,723	14,741	333,982	
도시주택과	소계	0	149,844	149,844	0	
	215-01 징수교부금수입	0	13,007	13,007	0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36,657	136,657	0	
	224-07 그외수입	0	180	180	0	
도 로 과	소계	0	1,042	1,042	0	
	216-03 기타이자수입	0	242	242	0	
	234-02 기타과태료	0	800	800	0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입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A-B)	비 고
교 통 과	소계	0	608,824	230,372	378,452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10	110	0	
	234-01 차량관련과태료	0	608,714	230,262	378,452 (1,308)	()는 결손액
토지정보과	213-05 기타수수료	0	433	433	0	
상하수도과	소계	0	19,652	19,652	0	
	216-03 기타이자수입	0	263	263	0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9,255	19,255	0	
	224-07 그외수입	0	134	134	0	
보 건 소	소계	0	16,971	1,638	15,333	
	225-01 지난년도수입	0	15,983	650	15,333 (708)	()는 결손액
	233-01 변상금	0	988	988	0	
평생학습도서관	소계	0	2,072	2,072	0	
	221-04 불용품매각대금	0	229	229	0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573	1,573	0	
	235-01 부정이익환수금	0	270	270	0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3조(자체수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미래전략실 등 23개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수납액 1,247,277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하여 잉여금이 발생함.
 - 이는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 40,004,449천원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8,642,572천원과 폐지된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9,555,071천원 등 18,197,643천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 세외수입 21,806,806천원의 5.7%에 달하는 금액으로 세입 전망 및 추계에 차질이 생김.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원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당해연도의 세외수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세입예산과목 분류 오류

현 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구 분	예산액	결산상 예산과목	예산과목경정	비 고
계	7건	9,555,071			
소계(기금)	5건	7,276,662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기금	1,017,232	224-07 그외수입	721-04 기금전입금	
100세행복과	노인복지기금	1,134,340	"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097,161	"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	993,929	"	"	
농촌활력과	농업발전기금	3,034,000	"	"	
소계(특별회계)	2건	2,278,409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24,508	224-07 그외수입	721-03 기타회계전입금	
도 로 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453,901	224-07 그외수입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의 과목을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제1항에 의하면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 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 수입,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폐지된 논산시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의 경우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 8,101,170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453,901천원 등 9,555,071천원을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잘못 분류된 예산액이 전체 세외수입 예산액 40,004,449천원 대비 23.9%로 그만큼 자체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세부 분류내용에 맞게 분류하여 세입예산의 성질별 자원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예측 가능한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

□ 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징수현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합계	646,542	11,530,451	379,807	285,997	10,864,647	
미래전략실	0	△1,031	△1,031	0	0	△는 환급액
자치행정과	0	1,356	398	0	958	
안전총괄과	0	8,376	650	0	7,726	
복지정책과	30,500	31,035	7,949	417	22,669	
100세행복과	0	33,756	14,245	0	19,511	
아동복지돌봄과	4,358	4,358	4,358	0	0	
주민생활지원과	0	3,654	80	0	3,574	
세 무 과	0	3,391	0	0	3,391	
회 계 과	0	12,560	8,600	0	3,960	
민 원 과	0	30,827	3,520	0	27,307	
지역경제과	937	7,027	3,076	0	3,951	
문화예술과	0	1,500	0	0	1,500	
체육진흥과	325	△20,619	△20,892	0	273	△는 환급액
농촌활력과	0	357,308	12,008	0	345,300	
축수산과	0	5,708	3,663	0	2,045	
환 경 과	5,425	17,119	1,495	0	15,624	
자원순환과	2,000	1,175,217	1,040	0	1,174,177	
농산물유통지원센터	0	975	0	0	975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고
건 설 과	2,000	18,475	2,892	3,134	12,449	
산림공원과	0	1,834	1,174	0	660	
지역개발과	0	348,723	14,741	0	333,982	
도 로 과	210,005	168,408	26,039	0	142,369	
교 통 과	327,735	4,672,504	244,312	280,617	4,147,575	
신속허가과	45,500	812,717	43,713	0	769,004	
토지정보과	4,000	964,387	2,206	0	962,181	
상하수도과	0	2,829,941	0	0	2,829,941	
보 건 소	0	15,983	650	708	14,625	
농업기술센터	0	△2,836	△2,836	0	0	△는 환급액
강 경 읍	0	953	522	344	87	
연 무 읍	4,710	11,556	4,710	0	6,846	
성 동 면	1,900	3,716	1,909	0	1,807	
광 석 면	2,000	1,909	115	0	1,794	
상 월 면	200	0	0	0	0	
부 적 면	1,000	767	0	0	767	
연 산 면	0	2,626	0	177	2,449	
별 곡 면	1,047	827	300	0	527	
양 촌 면	200	0	0	0	0	
가 야 곡 면	1,700	1	1	0	0	
은 진 면	1,000	4,665	125	0	4,540	
취 암 동	0	778	75	600	103	

[미수납액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계	차량관련 과태료	변상금	행 정 대집행비	건축법이행 강 제 금	부 동 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기 타
10,864,647 (100)	4,158,629 (38.3)	2,832,358 (26.1)	1,139,436 (10.5)	742,062 (6.8)	665,165 (6.1)	1,326,997 (12.2)

□ 문 제 점

- 논산시의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1,530,451천원 대비 수납액은 379,807천원으로 3.3%, 불납결손액은 285,997천원으로 2.5%이고, 미수납액은 10,864,64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2%이며, 징수율은 5.8%에 불과함.
- 미수납액 10,864,647천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상 세외수입 예산액 40,004,449천원의 2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미수납액 10,864,647천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차량관련 과태료가 4,158,629천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변상금이 2,832,358천원으로 26.1%, 행정대집행비가 1,139,436천원으로 10.5%,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 742,062천원으로 6.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665,165천원으로 6.1%, 기타 1,326,997천원으로 1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위하여 부서별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및 채권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질서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이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고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개선

현황

(단위 : 원)

구분	세입세출 결산상잔액	잔액증명서 발급 금액			금고명
		공공예금	정기예금	가이월	
일반회계	218,108,786,313	15,882,334,793 * 2022회계 3,108,786,313원 2023회계 12,773,548,480원 수기 표기	150,000,000,000	65,000,000,000	농협은행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334,175,573	3,527,607,673 * 2023회계 193,432,100원 수기 표기	14,000,000,000	1,000,000,000	하나은행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013,354,512	2,830,067,292 * 2023회계 1,316,712,780원 수기 표기	5,000,000,000	1,500,000,000	하나은행

문제점

- 2023년 1월 20일자 일반회계 공공예금 잔액증명서가 회계 단일통장으로 2022회계 잔액, 2023회계 잔액이 합산되어 총액 15,882,334,793원으로 일반회계 금고인 농협은행에서 발행되었음
- 일반회계 공공예금 잔액증명서 발행금액 15,882,334,793원은 일반회계 공공예금 계좌가 단일계좌로서 사실상 2022회계 잔액 3,108,786,313원과 2023회계잔액 12,773,548,480원이 포함되어 잔액증명서 상의 공공예금 금액과 결산상의 금액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2023회계 공공예금 잔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22회계 결산상의 잔액과 불일치 하는 사유를 가이월 확인서와 같이 별도서식에 의거 회계별 잔액 금액을 명확히 하고 금고의 직인으로 확인이 되어야하나,

- 금고인 농협은행에서는 잔액증명서를 2022회계와 2023회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발행하고 결산상의 금액과 불일치 하기 때문에 금고 담당자가 잔액증명서 상의 공란에 수기로 2022회계 금액 잔액 3,108,786,313원과 2023회계 잔액 12,773,548,480원을 기재한 것은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잔액증명서도 금고인 하나은행에서 일반회계 잔액증명서와 동일하게 2022회계와 2023회계가 합산된 금액으로 발행하고 잔액 금액을 수기로 작성하나 표기 방법은 일반 회계와 상이하여 잔액증명서의 신뢰성과 명확성이 부족함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별 단일통장으로 2022회계와 2023회계금액을 합산한 잔액증명서 발행은 인정되지만
- 금고와 협의하여 잔액증명서 발행 시 회계별로 분리하여 잔액증명서 발행이 어렵다면 금고 실무담당자가 수기로 표기하지 말고 별도 서식에 의거 회계별 잔액증명을 명시하고 금고 직인을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선 조치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5.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및 세입조치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부 서 명	대 상 자	금 액	만기일자	보관사유	비고
	계	12건	19,656			
1	회계과	씨○○○건설(주)	3,675	2015.12.07.	하자보증금	
2	회계과	엠○○건설(주)	335	2016.05.13.	하자보증금	
3	회계과	엠○○건설(주)	1,187	2016.11.24.	하자보증금	
4	회계과	하○○○○○○(주)	3,230	2017.09.29.	하자보증금	
5	신속허가과	박○○	355	2015.12.31.	복구예치금	
6	신속허가과	서울○○	6,669	2016.12.31.	복구예치금	
7	신속허가과	김○○	457	2016.12.31.	복구예치금	
8	신속허가과	김○○	1,060	2016.12.31.	복구예치금	
9	신속허가과	김○○	807	2016.12.31.	복구예치금	
10	신속허가과	백○○	265	2016.12.31.	복구예치금	
11	신속허가과	김○○	554	2016.12.31.	복구예치금	
12	신속허가과	김○○	1,062	2017.04.30.	복구예치금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에서는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반환 청구권자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하자보증금 4건에 8,427천원, 복구예치금 8건에 11,229천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의 귀속 또는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11건의 세입세출외현금(하자보증금, 복구예치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6.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적정

□ 현 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고
계	15건		723,465	723,465	
자치행정과	인사업무 추진	포상금	22,600	22,600	
지역경제과	에너지 절약 및 시설 안전관리	시설비	20,000	20,000	
	수소경제도시 활성화	시설비	150,000	150,000	
국방산업과	민군협력지원업무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20,000	20,000	
문화예술과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지원	사무관리비	10,000	10,000	
	공연유치 및 행사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0	30,000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자체사업)	기타보상금	10,000	10,000	
건설과	기초생활인프라(생활환경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70,000	170,000	
산림공원과	산불예방감시활동	시설비	10,000	10,000	
도시주택과	도시계획 및 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76,000	76,000	
도로과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소2-10호) 개설공사	시설비	15,515	15,515	
교통과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	감리비	100,000	100,000	
보건소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특교)	전산개발비	50,000	50,000	
	자살예방 홍보지원(자체)	시설비	14,000	14,000	
	감염병 대응	의료및구료비	25,350	25,350	

※ 일반회계 예산현액 10,000천원 이상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 승인 처리하여야 하며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월함이 타당함.
- 예산 성립 후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발생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되고 있는 사항임. 2021회계연도에도 12건에 1,310,709천원을 개선 요구 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서도 자치행정과 소관 인사업무 추진 22,600천원 등 15건에 723,465천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각 부서에서는 수시로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 성립 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방보조금(자체재원)사업 재원 배분 조정 필요

현황

○ 최근 3년간 보조사업 건수 및 사업비 증감율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2020년 (A)	2021년 (B)	2022년 (C)	증감율(%)		비고
				B/A	C/B	
총사업건수	287건	317건	366건	10.4	15.5	
총사업비	19,733,823	22,754,327	25,768,486	15.3	13.2	

※ 본 통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한하여 작성됨

○ 2020년도

(단위 : 건, 천원)

통계목	보조사업 건수	총사업비	재원배분		분담비율		비고
			시비	자부담	시비	자부담	
계	287	19,733,823	15,080,870	4,652,953	76%	24%	
민간경상 사업보조	130	6,268,331	4,950,138	1,318,193	79%	21%	
민간행사 사업보조	45	1,597,981	1,555,181	42,800	97%	3%	
사회복지 사업보조	25	1,624,002	1,624,002	0	100%	0%	
민간자본 사업보조	87	10,243,509	6,951,549	3,291,960	68%	32%	

○ 2021년도

(단위 : 건, 천원)

통계목	보조사업 건수	총사업비	재원배분		분담비율		비고
			시비	자부담	시비	자부담	
계	317	22,754,327	17,083,995	5,670,332	75%	25%	
민간경상 사업보조	154	11,132,194	7,735,706	3,396,488	69%	31%	
민간행사 사업보조	47	2,051,684	1,993,944	57,740	97%	3%	
사회복지 사업보조	22	1,391,935	1,391,935	0	100%	0%	
민간자본 사업보조	94	8,178,514	5,962,410	2,216,104	73%	27%	

○ 2022년도

(단위 : 건, 천원)

통계목	보조사업 건수	총사업비	재원배분		분담비율		비고
			시비	자부담	시비	자부담	
계	366	25,768,486	19,607,989	6,160,497	76%	24%	
민간경상 사업보조	180	13,250,057	9,524,118	3,725,939	72%	28%	
민간행사 사업보조	69	2,784,369	2,706,276	78,093	97%	3%	
사회복지 사업보조	94	1,564,615	1,556,215	8,400	99%	1%	
민간자본 사업보조	23	8,169,445	5,821,380	2,348,065	71%	29%	

□ 문 제 점

- 최근 3년간 순수시비 지방보조금 사업 4개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도에는 287건에 19,733,823천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317건에 22,754,327천원으로 전년대비 15.3%의 보조금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22년도에는 366건에 25,768,486천원이 지원되어 전년도 대비 13.2%로 해마다 민간보조금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현황에서 2022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자부담율은 28%로 나타나지만 대부분 농업관련 보조금이 40~50%대의 자부담을 하고 있어 농업관련 사업을 제외한 기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자부담율은 10%정도로 너무 낮고 특히 이중 104개 사업 4,068,045천원은 자기 부담이 전혀 없는 전액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어 동일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타 보조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됨.

- 또한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율은 3%밖에 되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조율과 자기부담의 재원 배분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있음
-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개인, 단체, 기관들이 과도한 보조사업이 증가되고있고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재원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자기부담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시 보조율과 자기부담의 재원배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방 보조사업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시비와 자부담의 재원 비율 조정 검토를 권고합니다.

8. 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율 제고

현 황(세외수입)

(단위 : 천원, %)

회계 연도	특별회계명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A-D)	징수율 (D/A)
			수납총액 (B)	환급액 (C)	실제 수납액 (D=B-C)		
2021	의료급여	432,535	38,844	0	38,844	393,691	9.0
2022		462,275	83,331	0	83,331	378,944	18.0
2021	주택사업	126,760	98,688	1,274	97,414	29,346	76.8
2022		112,143	83,489	1,704	81,785	30,358	72.9
2021	주차장관리	697,666	177,433	32	177,401	520,265	25.4
2022		4,881,696	4,320,152	0	4,320,152	509,467 *결손액52,077	88.5
2021	토지관리	631,815	480,501	0	480,501	151,314	76.1
2022		1,811,563	1,090,388	0	1,090,388	721,175	60.2

문 제 점

- 특별회계는 특정의 수입 지출을 구분하여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킨 회계단위로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에 필요할 때에 법률과 조례로 설치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령에 의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및 그밖의 수입금임.

- 특별회계의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징수실적이 높아야 함에도 위의 현황과 같이 2022년도 특별회계 세외 수입 징수율이 18.0%에서 88.5%로 저조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자체세입원 징수 결정 시부터 환급이나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 결정하여, 납기 내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체납 시 체납 사안별로 실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고, 압류 등 권리 보전조치로 채권을 확보, 회수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

현 황

연도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수익액(백만원)	5,036	5,195	4,761	5,167	5,147
총괄원가(백만원)	33,620	35,934	37,206	41,629	44,767
결함액(백만원)	28,584	30,739	32,445	36,462	39,620
처리원가(원)	3,611	3,762	3,911	4,252	4,559
평균단가(원)	541	543	500	527	524
현실화율(%)	14.98	14.44	12.78	12.39	11.49

타 시별 요금 현실화율

연도별 시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천안시	57.82	56.47	50.84	53.68	공시시기 미도래
아산시	18.27	15.95	22.8	27.11	
서산시	26.24	26.56	22.83	26.03	
보령시	17.42	19.76	21.36	24.06	
당진시	14.25	18.24	21.55	25.6	
계룡시	16.2	15.53	14.2	15.7	

□ 문 제 점

- 논산시의 하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논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밖의 수입으로 하고있음.
- 위의 현황과 같이 요금현실화율이 2018년 14.98%에서 2022년 11.49%로 매년 하향하고 있으며 결함액은 2018년 28,584백만원에서 2022년 39,62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도내 타 시와 2021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비교해보면 천안시 53.68%에서 계룡시 15.7%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시는 12.39%로 최하위임.

□ 개선 및 권고사항

- 하수도 사업의 면밀한 진단과 점검을 통하여 비용을 줄여 나가는 방법 등 대안을 모색하고 하수도 요금을 일정 수준 현실화율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0. 기금관리·운용 개선 필요

현 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기 금 명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계	예치금	예탁금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기금	834,141	834,141	106,141	728,000	
도시주택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307,138	307,138	11,138	296,000	
보 건 소	식품진흥기금	347,258	347,258	60,258	287,000	

- 논산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및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고,
- 논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논산시의 특화된 이미지 표출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논산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 및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현황과 같이 논산시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 계상은 없고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기금 설치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되고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는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여 기금 존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1.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현황

일반회계(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2020년 (A)	2021년 (B)	2022년 (C)	증감율(%)		비고
				B/A	C/B	
계	10,032	13,149	15,888	31.0	20.8	
국비	6,514	7,740	8,144	18.8	5.2	
도비	3,518	5,409	7,744	53.7	43.2	

문제점

- 의존재원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 공직자가 정부 동향과 예산 편성 방향을 분석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 부처, 국회, 충청남도로부터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로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한 것은 매우 칭찬받아야 마땅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보면 2020년도에는 국비 6,514백만원, 도비 3,518백만원 등 합계 10,032백만원을 반납하였고 2021년도에는 국비 7,740백만원, 도비 5,409백만원 등 합계 13,149백만원을 반납하여 전년도 대비 31%가 증가되었음
- 또한 2022년도에는 국비 8,144백만원, 도비 7,744백만원 등 합계 15,888백만원이 발생, 전년도 대비 20.8%가 증가되었으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환 하여야 하는 실정임

- 전 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인 만큼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국·도비 반납금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역의 현안 해결,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예비비 지출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조직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자원 순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시설비	792,000	0	750,000	42,000	2022. 10.28.		상월면 숙진길 53 부지 내 적치된 방치폐기물(동식물성 잔재물 6,000톤) 대집행 처리
건설과	수자원 개발 운영관리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배상금 등	130,000	0	0	130,000	2022. 2.3.		2022카정102 강제집행정지 결정관련 공탁금 지급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정하게 대처토록 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 현황과 같이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리 시설비 목으로 상월면 숙진길 53 부지 내 적치된 방치폐기물 6,000톤의 대집행 처리비 792,000천원을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2022년 10월 28일 지출 결정하였으나
- 대집행 사업비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4회 추경(2022. 12. 21.승인) 예산 편성 시 750,000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은 굳이, 시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제4회 추경이나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집행 사업비를 반영하였어야 함

- 또한 건설과 소관 하천 및 소하천관리 배상금 목으로 2022카정102 강제집행정지 결정 관련 공탁금 130,000천원을 2022년 2월 3일에 긴급하게 예비비 지출결정 하였으나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130,000천원 전액 불용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시기, 금액 등 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집행 시에는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현 황(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A)	세출 (B)	잉여금(A-B)				세출예산대 순세계 잉여금 비율
			계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3년평균	1,293,829	1,044,020	249,809	168,948	15,588	65,273	6.3%
2022	1,429,395	1,182,562	246,833	164,875	18,306	63,652	5.4%
2021	1,275,337	1,014,162	261,175	180,958	16,831	63,386	6.3%
2020	1,176,754	935,335	241,419	161,011	11,626	68,782	7.4%

문 제 점

- 순세계 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잔액에서 이월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의미함
- 논산시의 최근 3년 평균 순세계 잉여금 발생율은 6.3%이며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63,65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예산 규모 증가에 비하면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는 상당히 잘 관리 되고 있다고 판단됨
- 세수의 증가, 세출의 절감, 불용액의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재정지표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낮으며 그만큼 적기에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놓쳤다고 볼 수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완료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14.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

현 황

부서	성과지표명	2021년도			2022년도			비고
		목표	실적	달성율(%)	목표	실적	달성율(%)	
세무과	과년도 체납세금 정리율(%)	32	40.5	127	32	39.5	123	
민원과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78	82.8	106	78	86.11	110	
투자유치과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건)	50	53	106	50	151	302	
산림공원과	조림(ha)	155	185	119	155	195	125	
보건소	주민주도 건강동아리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회)	286	373	130	286	474	165	
	공동체 건강관리(명)	27,688	58,729	212	25,750	30,235	117	
평생학습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개)	30	74	247	30	60	200	

문 제 점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에는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고 달성율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나 2022년도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전년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21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직전년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15. 공유재산(행정재산) 관리 소홀

현 황

재산명	소재지	재산내역	용도	관리기간	현재상태	관리부서
공공재산	논산시 관촉동 161번지	대지 637㎡ (192평), 건물 61㎡ (18평)	정수장 관사	2012. 4. 29. ~ 2017. 4. 28. (사용허가)	정비보수 또는 관리되지 않은 폐건물 존치	상하수도과
				2017. 4. 29. ~ 2020. 10. (무단점유)		
				2020. 10. ~ 현재까지 (폐건물 존치)		

문 제 점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논산시 관촉동 161번지 소재 정수장 관리사용도인 행정재산 정수장 관사는 대지 637㎡(192평), 건물 61㎡(18평)로써 2012. 4. 29. ~ 2017. 4. 28.까지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 허가 후 관리되었으나,
- 사용허가가 종료된 2017. 4. 29. 부터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하다가 2020. 10월 경 퇴거 후 현재까지 폐건물로 존치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하였음.

- 또한 본 공공재산(행정재산)인 정수장 관사 건물은 논산 11경 중 제1경인 관촉사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정비 및 관리가 안된 채로 존재하고 있어 논산의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개선 및 권고사항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실태조사) 및 동 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에 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시 위생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

시 위생매립장 현황

- 위 치 : 논산시 은진면 버들길 137 일원
- 부지면적 : 89,793m²(27,210평)
- 매립용량 : 600,894m³
- 시설규모
 - 매립장 : 54,300m²(16,454평)
 - 관리동 및 부대시설 1식(침출수 처리장)
- 사용연한 : 2002 ~ 2027년
- 매립방식 : 준 호기성 매립(Cell매립)
- 공사기간 : 1997. 12. 23. ~ 2001. 11. 23.
- 사 업 비 : 8,832백만원(토지매입비 741, 감리비 523, 설계비 158, 공사비 7,410)
- 최초반입 : 2002. 2. 18.
- 매립장 사용 현황

(단위: m³)

매립용량	기 매립량 (2021.12.)	2021년도 매립량				매립 가능량
		계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제외)	소각재	기타 (복토재)	
600,894	490,058	24,342	18,267	2,405	3,670	110,836

- 2022년 주요예산
 -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 2,090,458천원
 - 폐기물 처분 부담금(매립, 소각) : 312,515천원
 - 폐기물 주변지역 영향 조사 용역 : 107,000천원
 - 폐기물 처리비(폐목재, 건설폐기물 등) : 2,450,000천원

□ 문 제 점

- 위 현황에서와 같이 시에서는 은진면 버들길 137 일원에 1997. 12. 23. ~ 2001. 11. 23.까지 부지면적 89,793m², 매립용량 600,894m³의 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2002. 2. 18. 최초 반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 운영하고 있음
- 매립이 시작된지 22년이 경과된 현재 쓰레기 1일 반입량은 일 평균 61톤, 연간 22,464m³가 반입되고 있으며 600,894m³의 매립 총량 중에 기매립량은 490,058m³이고 잔여 매립가능량은 110,836m³로써 앞으로 시 위생매립장의 매립면적은 전체 용량의 18%밖에 남아있지 않음. 앞으로의 사용기한은 2027년으로 예상되어 시 위생매립장의 수명은 5년이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 또한 증가되는 생활쓰레기의 배출량 증가를 감안하면 더 단축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환경 기초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임
-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악취,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재산상의 문제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환경 기초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오염과 불이익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
- 혹여라도 시 위생매립장이 포화되어 더이상 매립이 불가하여 신규로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할 시 예정지 선정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님비 현상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감안하면 사용기한이 채 5년이 남지 않은 현재 매립장 사용 연장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막대한 위탁처리비용과 심각한 쓰레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선 및 권고사항

- 현재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설치사업과 이에 연동되는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그리고 여러 쓰레기 감소 대책 사업비들이 적기에 투입되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